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9. 21 선고 2021가단23167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위길복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8. 31.

판 결 선 고 2022. 9. 21.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7. 2.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7. 2. 27. 접수 제152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5. 11. 5. C에게 4,000,000원을 대출기간 24개월, 약정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각 연 29.9%로 하여 대여하였고, 2017. 8. 22. 원고에게 위 C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소567632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0. 24. “C는 원고에게 2,476,096원 및 그 중 1,923,136원에 대하여 2018.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C는 2017. 2. 24.경 자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자신의 남편인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7. 2. 27. 접수 제15270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라. 이 사건 증여 당시 C는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은 없었고, 소극재산으로는 E은행에 대한 128,441,000원, F카드에 대한 1,082,000원, G회사에 14,999,000원, H은행에 1,490,000원, 소외 회사에 대한 1,923,136원의 각 채무 등 합계 147,935,136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이 법원의 I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참조), 그와 같은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이를 이전받는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47016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C는 피고 및 피고의 이모, 어머니에게 5억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었고, 그 빚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구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년경부터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피고는 C로부터 채무에 대한 재산분할의 의미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고, 이 사건 증여가 재산분할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C가 2020. 10. 8. 협의이혼 신고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가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하여 재산분할로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와 C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7. 2. 24.로부터 약 3년 7개월 이상이 지난 2020. 10. 8.에야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 ②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무렵 C와 사이에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위자료 등에 관한 별다른 합의 내지 약정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 ③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당시 피고와 C는 각 1/2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C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이 사건 증여 당시 C는 위 채무를 그대로 부담한 상태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만을 피고에게 이전하였다.
- ④ C의 주소지는 2021. 12. 20. 현재까지 피고의 주소지와 같은 '광주시 J, K호인바, 피고가 협의이혼 이후 C와 별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정민

[별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광주시

[도로명주소] 경기도 광주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공동주택(다세대주택)

1층 내지 4층 각 공동주택(다세대주택) 157.0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광주시 전 63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3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72.47㎡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633분의 79.125

